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84

발의연월일: 2021. 7. 28.

발 의 자:황운하·홍정민·양정숙

이용호・오영환・이규민

민형배 · 홍기원 · 유동수

송옥주·이성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고,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. 하지만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 총 12곳 중 5곳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.

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공표할 수 있다"를 "공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	제22조(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
치) ① ~ ⑤ (생 략)	치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	6
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	
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	
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	
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	이 경우 업무기관의
	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
	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
	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	7
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	
행실태를 점검하고, 권고를 받	
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	
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	
경우 그 내용 등을 <u>공표할 수</u>	<u>공표하여야</u>
있다.	한다.
⑧·⑨ (생 략)	⑧·⑨ (현행과 같음)